

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6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17.

발 의 자 : 김소희·박형수·김성원
이양수·우재준·최수진
이현승·박덕흠·성일종
김대식·김상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(地中)에 저장하거나 산업적·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.

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, 경제성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. 하지만,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함.

이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

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203호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203호 이산화탄소 포집 · 수송 ·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(보조 · 용자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법률 제20203호 이산화탄소 포집 · 수송 ·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(보조 · 용자) ① · ② (현 행과 같음) <u>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 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 품의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.</u>